

## 「2026년 제2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」 지원대상자 모집공고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 라 함)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재창업자(업종전환희망자)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·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「2026년 제2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」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4월 6일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

### 1

###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재창업자(업종전환희망자) 및 초기창업자(창업 3년 미만)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자립 기반 마련
- (선정규모) 총 20명(예비창업 및 재창업 16명, 초기창업 4명 예정)
  - \*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(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)
  - \*\* 점포계약 예정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
- (지원내용) 창업점포 전·월세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
- (지원업종) ‘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(참고자료 2)’을 제외한 모든 업종
  - \* 단, ① 부동산관리업(6821), ②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, ③ 비주거용건물임대업 (68112) 중 공유오피스·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
· (부동산관리업)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 
· (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)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2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(신청기간) '26.4.6.(월) ~ 5.7.(목) 18:00 도착 분까지

\* 등기우편접수는 5월 7일자 소인분까지, 온라인 접수는 '최종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

□ (신청방법) 온라인/이메일/내방/등기우편 접수 중 택 1

접수방법					
온라인 접수	DEBC 창업 NET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<a href="https://start.debc.or.kr/">https://start.debc.or.kr/</a> ① 회원가입 → ② 사업신청 선택 → ③ 창업 점포사업 선택 → ④ 신청하기				
이메일 접수	changup1@debc.or.kr <table border="1"> <tr> <td>메일제목</td> <td>2026년 창업점포지원사업_000(신청자 이름)</td> </tr> <tr> <td>제출방법</td> <td>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</td> </tr> </table>	메일제목	2026년 창업점포지원사업_000(신청자 이름)	제출방법	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
메일제목	2026년 창업점포지원사업_000(신청자 이름)				
제출방법	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				
내방/등기우편 접수	(07230)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, 창업지원부				
문의처	02-2181-6527				

※ 접수 후 문의 연락처를 통한 서류접수 여부 최종 확인 필수

□ (신청자격) '26. 1. 1.(목)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\*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, 재창업자(업종전환희망자) 및 초기창업자(창업 3년 미만)

\* 창업교육과정 : 온라인 창업교육(기초, 역량강화, 재기, 협동조합, 시각장애인, AI활용 창업교육)

<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>	
수강 절차	수강 방법
교육 신청	① <a href="https://start.debc.or.kr/">https://start.debc.or.kr</a>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·역량강화·재기·협동조합·시각장애인·AI활용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(업종전환희망자는 재기교육 필수 수강) ④ 성명·연락처·성별·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
교육 수강	온라인교육은 기초·역량강화·재기·협동조합·시각장애인·AI활용 창업교육 6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* 교육 당 8강~24강 까지 제공/ 강의 진도를 100% 완료
수료증 발급	<a href="https://start.debc.or.kr/">https://start.debc.or.kr</a>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설문조사 완료 후 수료증 출력 가능

□ 서류심사 지원자 제출서류(~5/7(목)까지 제출)

구분	제출서류	발급방법
공통 (필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붙임파일 2&gt; 지원신청서, 자기소개서, 사업계획서</li> <li>&lt;붙임파일 3&gt;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(센터 제출용, 신용회사 제출용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센터홈페이지(<a href="https://www.debc.or.kr">https://www.debc.or.kr</a>) 접속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`점포` 검색 후 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※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</li> </u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라인 발급 정부24(<a href="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">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</a>)</li> <li>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</li> </o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족관계증명서 * 발급대상자: 본인, 일반증명서 발급 *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신청자 본인의 것만 모두 나오게 처리 ※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</li> </u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라인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<a href="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">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</a>)</li> <li>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</li> </o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센터 주관 교육 수수료증 사본 1부</li> <li>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단, 생애 첫 창업(창업경험이 없는 경우)의 경우 '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발급 ※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페이지(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) 참고</li> <li>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(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http://www.hometax.go.kr</a>)</li> <li>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, 특화교육 수수료증</li> <li>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(지식재산권 등)</li> <li>센터 「기업가 역량강화 센터」 교육 수수료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상증빙자료 및 특화교육 수수료증(발달장애 특화교육 포함)</li> <li>개별 사본 제출</li> <li>창업넷(<a href="http://start.debc.or.kr">http://start.debc.or.kr</a>)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발급</li> </ul>
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저소득 증빙서류 (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) ※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</li> </u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라인 발급 (수급자)정부24(<a href="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">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</a>) (차상위)복지로(<a href="https://www.bokjiro.go.kr/">https://www.bokjiro.go.kr/</a>)</li> <li>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</li> </ol>

□ 면접심사 합격자 제출서류(~6/12(금)까지 제출)

구분	제출서류	발급방법
공통 (필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</li> </u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(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http://www.hometax.go.kr</a>) , 관할 세무서 방문</li> <li>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(<a href="https://www.gov.kr/">https://www.gov.kr/</a>),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</li> </ol>
업종 전환 (필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자등록증명원 ※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</li> </u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(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http://www.hometax.go.kr</a>)</li> <li>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</li> </o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종전환확약서 &lt;붙임파일 3 참고&gt; -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번호 (5자리) 작성 必</li> </u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통계분류포털 - 경제부문 -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- 분류검색</li> <li>통계청 상담센터 (02-2012-9114)를 통한 유선 상담</li> </ol>
초기 창업 (필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자등록증명원 ※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</li> </u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(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http://www.hometax.go.kr</a>)</li> <li>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</li> </o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기업확인서</li> </ul>	<a href="http://smpp.go.kr">smpp.go.kr</a> (공공구매종합정보망) 발급가능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</li> </u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(<a href="http://www.iros.go.kr">http://www.iros.go.kr</a>)</li> <li>오프라인 발급 관할 등기소</li> </ol>

※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 권한 소멸

## 지원제외대상

1.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[참고자료 2번]
2. 비영리사업자(단,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가능)
  - \* 「상법」에 의한 회사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(비영리사회적기업, 어린이집, 장기요양센터 등)
3. 모집공고일 이후 폐업한 자(단, 업종전환 희망자는 지원 가능)
4. 센터에서 점포지원(사업화지원)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(중도포기자\* 포함)
  - \* 점포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지원기간(5년)을 채우지 못한 경우
5.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자\*
  - \*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 (초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지원 가능)
6.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

- 창업점포는 ‘센터’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\*에 한함
  - 부동산중개수수료, 권리금, 관리비, 월세,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
  - \*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,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
  - \*\*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,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%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

[잔존평가액 계산기준] 부동산가액(감정평가액기준)-선순위[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+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(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) + 센터지원금(전세보증금)]

-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특수관계\*일 경우 지원 불가\* 민법상 친족의 범위(민법 제777조)를 준용
- 협약 체결 후 익일부터 60일 이내 점포 계약
  -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자의 권한은 소멸됨
  - 점포 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(초기창업자 제외)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\*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자의 권한은 소멸됨

\* ‘실질적 사업 개시’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

- 1)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시설공사를 완료한 경우
- 2)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
- 3) 사업과 관련한 집기 및 재료를 구입한 경우 등, 사업개시를 위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입주목적물의 입주기간은 최초 계약기간 2~3년을 원칙으로 하고, 최초 계약기간과 연장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음

## □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

※ 평가위원회 : 장애인 분야 전문가,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

## ○ 평가방법(서류심사, 면접심사)

$$\text{평가점수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수} - 2}$$

## ○ 서류심사 :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인원(지원규모)의 2배수 이내 선발

## 【대상자 선정·평가 가점부여 항목】 ※ 각 항목별 2점

1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'장애인의 장애 정도' 기준)
2. 저소득장애인(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여부)
3. 청년창업예정자(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)
4. 여성장애인
5. '센터'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(단, 직전년도(2025년) 이후 수료자만 해당)
6. '센터'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
7. '센터' 기업가 역량강화 센터 교육을 수료한 자

## ○ 면접심사 :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

## ○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

$$\text{최종점수} = \text{서류심사} * 0.3(30\%) + \text{심층면접심사} * 0.7(70\%)$$

- 1차 서류심사(30%) + 2차 면접심사(70%)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(지원규모)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, 단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

\*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## ○ 예비후보자 선발

- 선정대상자 외에 최종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고, 기존 선정자가 협약체결일 익일부터 60일 이내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권한 부여

□ 심사항목 및 배점 (서류평가)

항목			세부 평가요소						배점
신청자 환경	지원의 필요성	정성	- 신청자 환경 및 마인드						15
	신청자 신용상태	정량	- 개인신용보고서의 신용등급 ※ 개인신용등급 거래실적이 없어 미확인일 경우 3~6등급(3점)으로 산정						5
			점수	891~1000	630~890	454~629	0~453	신용회복 지원중 개인회생 파산면책	
			배점	5	4	3	2	0	
사업 계획성	아이템 선정배경	정성	- 업종 선정의 배경 및 사업가능성 등 아이템 선정의 적합성						10
	아이템 조사·분석		- 입지의 적합성 및 경쟁업체, 고객 분석						15
	아이템 운영방안		- 아이템 운영계획 및 실현 가능성,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						10
	아이템 수익계획		- 아이템 수익에 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※ 단, 기술평가 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아이템 운영방안으로 평가						15
자금계획	소요계획	정성	- 자금사용계획 내용의 파악 및 산출금액의 구체성						15
	조달방안		- 자부담계획 금액의 확보 및 조달 가능성						15
가점		가점	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저소득장애인 해당자 - 청년창업예정자(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) - 여성지원자 - '센터' 주관 특화교육 수료 여부(단, 직전년도(2025년) 이후 수료자만 해당) - '센터'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해당 아이템으로의 지원여부 - '센터' 기업가 역량강화 센터 교육 수료 여부 * 단, 가점의 경우 최대 10점까지만 인정가능						각 2
<b>총합</b>								<b>110</b>	

□ 심사항목 및 배점(면접평가)

항목		세부 평가요소						배점
신청자 역량	정성	- 신청자 보유역량 및 기술, 경험 등 창업 가능성						30
아이템가능성		- 신청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, 시장 가능성						20
시장조사·운영방안		- 시장 및 입지환경에 대한 이해정도와 운영방안,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						20
소요자금 조달계획		- 소요자금의 규모와 자기자금 조달방안의 타당성						15
사업 위험분석		- 사업·아이템의 수익 수준,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방안 적정성						15
<b>총합</b>								<b>100</b>

□ 정성평가 배점 기준

배점 \ 단계	매우양호	양호	보통	미흡	매우미흡
30점	30	25	20	15	10
20점	20	16	12	8	4
15점	15	12	9	6	3
10점	10	8	6	4	2

## 5

## 추진절차

단 계	일 정	내 용
신청·접수	4.6.(월)~5.7.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온라인, 이메일, 내방, 등기우편 접수</li> </ul>
기초서류심사	5.14.(목)~5.15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</li> <li>서류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</li> <li>종합점수의 30% 반영</li> </ul>
서류심사 합격자 발표	5.19.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</li> <li>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</li> </ul>
심층면접심사	6.1.(월)~6.2.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종합점수의 70% 반영</li> <li>면접심사</li> </ul>
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및 최종 서류 제출	~6.12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면접심사 합격자 대상 최종서류 접수</li> <li>※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검토 결과 부적절한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</li> </ul>
최종 합격자 발표	6.17.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</li> </ul>
사업설명회 개최	6.29.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개요 안내 및 우수사례 발표, 협약체결 등</li> </ul>
창업 컨설팅 진행	6.30.(화)~8.28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정자 대상 분야별 맞춤 컨설팅 지원</li> </ul>
대상자 희망점포 발굴	6.30.(화)~8.28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협약체결일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권한은 소멸됨</li> </ul>
희망점포 감정평가	6.30.(화)~8.28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순위 채권 파악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결정</li> </ul>
점포 계약체결	6.30.(화)~8.28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물주-센터 간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 및 센터-대상자 간 전대차 계약 동시 체결</li> </ul>
임차보증금 지원	6.30.(화)~8.28.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, 이후 14일 이내 잔금 지급</li> </ul>

※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심층면접심사 및 사업설명회 장소는 추후 통지 예정

## 6

##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 
※ 접수 미확인으로 인해 지원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자에게 책임 발생
- 면접심사 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 부담
-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점포지원, 사업화지원 기수혜자 신청 불가(선정 후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권한 소멸)

## 7

## 선정자 의무사항

- (협약 체결)** 선정자는 선정 이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
- (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)** 선정자는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,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, 발급수수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
- (센터 관리비 납부)** 선정자는 지원금액(전세보증금)의 연 1.5%를 관리비로 센터에 납부
  - ※ 계약 시 납부방법을 정하여 납부(선납 또는 연납)
  - 선납 시 관리비용의 20% 감면된 금액을 센터로 납부
  - 연납 시 잔여 부과관리비를 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필수
  - 관리비 납부는 계약일 전까지, 이행보증보험의 발급은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권한 소멸

## &lt;센터 관리비 납부 예시&gt;

지원금액	연 관리비 (지원금액의 연 1.5%)	계약 기간	납부금액 총액
1억3천만원	지원금액(1억3천만원) * 1.5% = 195만원	2년	195만원 X 2년 = 390만원



선납	납부금액 총액 390만원의 20%(78만원) 감면한 금액 312만원 선납
연납	납부금액 총액 390만원을 연 단위로 납부(최초 납부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이행보증보험 발급)

## 참고1 장애인·예비창업자·재창업자(업종전환희망자)·초기창업자 기준

- **(장애인)*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
- **(예비창업자)** 모집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(비영리 포함)을 하지 않은 자(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확인)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(2026.4.5.)까지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(단,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)
- **(업종전환희망자)**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, 새로운 업종\*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(업종전환희망자는 점포 계약 체결 후 45일 이내에 기존 사업을 모두 폐업하거나 양도하고,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을 해야함)

\*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도 폐업·양도 대상에 포함

\*\*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(4단위),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(3단위)가 다른 업종. 단,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(5단위)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.

\*\*\*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붙임파일 참고.  
 1) <https://kssc.mods.go.kr:8443/> 접속 → 경제분류 → 한국표준산업분류 → 분류검색  
 2) 통계청 상담센터(☎ 02-2012-9114)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종류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코드(5자리)를 확인하고, 기존 및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코드를 활약서에 기재하여 제출

### <업종전환 예시>

분류	전환 전 업종		전환 후 업종		업종전환 인정여부
	업태	종목	업태	종목	
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	교육 서비스업 (85)	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(85709)	정보통신업 (58~63)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(59111)	업종전환 인정 ※소분류(857→591) 변경
	숙박 및 음식점업 (55~56)	한식 일반 음식점 (56111)	숙박 및 음식점업 (55~56)	커피전문점 (56221)	업종전환 인정 ※소분류(561→562) 변경
	정보통신업 (58~63)	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(58122)	정보통신업 (58~63)	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(58111)	업종전환 불인정 ※소분류(581) 동일
제조업	제조업 (10~34)	빵류 제조업 (10602)	제조업 (10~34)	도시락류 제조업 (10701)	업종전환 인정 ※세분류(1060→1070) 변경
	제조업 (10~34)	식초,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(10831)	제조업 (10~34)	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(10832)	업종전환 불인정 ※세분류(1083) 동일

- **(초기창업자)*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\* 대표자  
 \*2023. 4. 7. ~ 2026. 4. 6. 기간 내에 창업한 기업

창업일 기준
■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■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
## 참고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
표준산업분류	업종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(경영애로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)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모피제품도매업(46416, 46417 중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
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
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**< 재해자금 용자 허용 업종 >**

재해피해 소상공인	용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모피제품도매업(46416, 46417 중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(추가)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(추가)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
-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- \*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-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
※ 제외업종 확인방법 : ① 표준산업 분류코드 확인\* → ② 지원제외업종 분류번호 비교[참고2]

\* 표준산업분류코드(5자리) 확인 방법

- 1) 통계청 상담센터(02-2012-9114) →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종류 확인 및 코드 안내 요청
- 2) <https://kssc.mods.go.kr:8443/> 접속 → 경제분류 →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→ 분류검색